

碩士學位論文

企業特性과 有效法人稅率의 關係에 관한 實證研究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 專攻

許 倫 楨

碩士學位論文

企業特性과 有效法人稅率의 關係에 관한 實證研究

指導教授 朴 漢 淳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 專攻

許 倫 楨

2000年 6月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3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4
제1절 조세감면에 관한 세법규정	4
제2절 유효세율에 대한 이론적 검토	6
1. 유효세율의 정의	6
2. 유효세율의 문제점	7
제3절 선행연구	9
1.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10
2.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12
3.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15
제3장 연구설계	20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20
제2절 변수의 측정	23
제3절 분석모형	25
제4절 표본의 선정	26

제4장 실증분석	28
제1절 변수의 기술통계	28
제2절 기업규모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분석	33
제3절 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분석	37
제4절 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분석	43
제5장 결론	48
제1절 연구의 요약	48
제2절 한계점 및 향후과제	51
<참고·인용문헌>	53
ABSTRACT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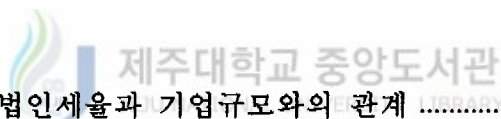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3-1> 산업별 표본기업 수	33
<표 4-1> 변수의 기술적 통계	34
<표 4-2> 자산규모별 유효법인세율 차이에 대한 ANOVA분석	40
<표 4-3>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의 분류	41
<표 4-4>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에 대한 부분선형회귀분석 결과	42
<표 4-5> 기업특성에 따른 ETR의 차이에 대한 t검정	43
<표 4-6> 기업특성에 따른 ETR의 차이에 대한 Wilcoxon 순위합검정 ...	44
<표 4-7>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46
(기업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표 4-8>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에 대한 연도별 회귀분석결과	48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을 분할한 경우)	
<표 4-9> 산업별 변수의 평균	49
<표 4-10> 산업별 회귀분석결과	50
<표 4-11> 산업특성을 고려한 부분선형회귀분석 결과	51

그림 목 차

<그림 4-1> 연도별 유효세율의 추이	35
<그림 4-2> 연도별 기업규모의 추이	36
<그림 4-3> 연도별 부채의존도의 추이	36
<그림 4-4> 연도별 자본집약도의 추이	37
<그림 4-5> 연도별 수출비율의 추이	37
<그림 4-6> 연도별 자기자본이익률의 추이	38
<그림 4-7>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와의 관계	4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조세는 국자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의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조세정책, 특히 기업의 조세규정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즉 정부는 조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조세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도 한다.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지원을 특정 경제활동을 조장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특례나 감면의 혜택을 받는 산업 또는 기업이 있는 반면 이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산업 또는 기업도 존재하게 되어 산업 또는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산업별로 또는 기간별로 차이가 나게 된다.(안숙찬, 1996)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을 주로 이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조세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에 따라서 또는 같은 기업이라도 연도별로 다른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비록 동일한 법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연도라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직접감면(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과 간접감면(준비금, 특별상각 등)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는 유효법인세율과 기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다양하다.

Zimmerman(1983), 조성표(1990), 권현섭·정문현(1995) 등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와 유효세율에 관련연구가 이루어졌는데, Zimmerman(1983)

의 연구에서는 미국 50대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나타났으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이 단조적(monotonic)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조성표(1990)의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유효세율이 타 기업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성기·안숙찬(1994), 안숙찬(1996)의 연구에서는 규모와 유효세율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규안(1997)에서는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기본적인 한계는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간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자본적 구조, 자산구성 등의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유효법인세율의 다양성에서 시작된다. 즉, 기업규모 이외에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조세부담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Stickney & McGee(1982), Gupta & Newberry(1997), 안숙찬(1996), 전규안(1997) 등이 있지만 아직 유효세율과 기업규모 이외의 기업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효법인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성과에 대한 통제 하에서 유효세율이 기업의 규모, 기업의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등 기업의 특성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실증분석 해 보고, 산업별차이가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전규안(1997)의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통제 없이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것에 반해 본 논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 기업의 수익성 통제를 위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각 변수들을 단일변량으로 놓고,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간에 유효법인세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Wilcoxon 순위합검정을 하였고,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기업규모를 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20%인 기업, 상위 20%이상 40%인 기업, 상위 40%이상 70%인 기업, 상위 70%이상 100%인 기업으로 구분한 후 ANOVA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업별차이가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결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주)의 분류기준에 따라 산업을 10개로 구분하고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조세감면에 관한 세법규정과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변수를 측정하고, 표본을 추출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제1절 조세감면에 관한 세법규정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 방식은 직접감면방식과 간접감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감면방식은 법인세액 또는 과세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제도로써 세액공제, 세액감면(면제), 소득공제 등이 있다. 간접감면방식은 법인세 납부시기를 연기시키는 조세지원제도로써 특별상각,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직접적인 조세지원방식인 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할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로써 가장 직접적인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감면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또는 일정비율만큼 경감해주는 조세지원제도로 기관투자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증자소득공제, 축산업소득공제 등이 있다.

간접적인 조세지원방식은 법인세의 납부시기를 연기시키는 제도로써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있다. 특별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통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별상각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법인세부담이 감소되나 이후에는 계상할 수 있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조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²⁾ 준비금의 손금방식은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을 손금으로 미리 산

1) 1998년 12월 31일자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었으나, 본 논문의 실증분석 기간이 개정 이전인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이기 때문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사용한다.

입하여 조세의 납부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제시되어 있다. (안숙찬, 1996)

1998년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³⁾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로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있고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장외등록중소기업 등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2.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투자에 소요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완료되어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함으로써 투자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를 촉진한다.

3.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거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 특별상각은 1994년에 전면폐지되었으나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상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있다.

3) 1998. 12. 28 개정세법

4.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5. 부채관련 세법 규정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의 이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및 임야 등의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등은 손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6.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수출 등의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절 유효세율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유효세율의 정의

법인세율은 법정법인세율과 한계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 및 유효법인세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정법인세율은 법인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로서 모든 영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계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이 1원만큼 증가할 때 부과되는 조세의 현재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평균법인세율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현재가치와 과세소득의 현재의 비율을 말하며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조세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기본공식은 법인세/이익이다. 분자의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말하는데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이 될 수도 있고,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될 수도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시 법인세만을 분자로 이용하는 경우는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이라고 하고 법인세, 재산세 및 배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분자로 하는 경우를 유효총세율(effective total tax rate)이라고 하기도 한다.

분모로 사용되는 이익의 대응치로는 매출총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많은 이익변수들이 이용되고 있다. 조성표(1990), 안숙찬(1996)은 법인세를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권현섭·정문현(1995)은 법인세를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것과 다음연도의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을 고려한 법인세를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것을 사용하였고, 전규안(1997)에서는 매출총이익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이용하였다. Gupta & Newberry(1997)에서는 법인세 등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모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였고 분자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을 사용하였다.

2. 유효세율의 문제점

1) 유효법인세율의 이용가능성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시 분모로 사용되는 이익이 0이거나 음수의 경우 계산된 유효법인세율은 무의미하다. 즉 기업회계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회계상으로 결손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법인세율의 경제적 해석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많은 기업이 연구표본에서 제외 되어 한다.

2) 유효법인세율의 신뢰성

(1) 세무회계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 기업이 실제로 순경영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무회계상의 결손발생으로 인한 세제상 혜택이 기록되지 않다가 결손의 후기이월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제상 보조금이 기록되어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기록된다.

즉 결손이 실제로 발생한 연도에는 세제상 보조금이 낮게 기록되며 그 후에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제상 보조금이 과대계상된다. 이 같은 문제점은 비대칭적 과세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2) 표본의 대표성

이익이 양수이어서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도 표본으로 선택된 기업들이 전체기업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경제전체에 대해서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을 할 때 특정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표본에 포함되거나 또는 표본에서 제외됨으로써 자기추출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3) 내재적 조세

유효법인세율은 내재적조세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과소계상하는 문제점이 있다.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면 기업의 실제 총세부담은 유효법인세율보다 높다. 즉 유효법인세율에는 내재적 조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이 조세혜택을 받는 투자를 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내재적조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는 적은 조세를 내게되어 유효법인세율은 적게 계상된다.

(4) 다양한 유효법인세율의 정의

유효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이익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이때의 분자의 법인세로 사용되는 대응치로는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 외에도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을 고려한 법인세등이 사용되며 법인세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한편 분모로 사용되는 이익으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외에도 현금흐름 등 많은 변수가 사용될 수 있다.

(5) 세제상 보조금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

세제상 보조금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유효법인세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고 반대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6) 투자·재무의사결정시 유효법인세율의 유용성

Scholes와 Wolfson(1992)은 유효법인세율은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균법인세율이 더 좋은 측정치가 되지만 이것 역시 조세정책목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투자나 재무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한계법인세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법인세율의 측정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기업간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거나 정치적 비용과 기업규모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유효법인세율이 더 적절한 측정치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7) 의도적인 완충지대설정 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poooner(1986)에 의하면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지지만 기업들은 때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완충지대를 설정한다. 즉 기업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실제로 예상하는 조세액보다 세금을 과대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제3절 선행연구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의 논문으로는 이창우·전규안(1997), 고종권(1997), 조성표(1990), 안숙찬(1996), 전규안(1997)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에 대한 연구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업규모이외의 기업특성과 유효법인

세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연구를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에 대한 연구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업규모이외의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개관한다.

1.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1) 이창우·전규안(1997)

이창우·전규안(1997)은 유효세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유효법인세율의 대응치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 또는 조세혜택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 12월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986-1993동안 연간 재무제표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 금융업 등이 아닌 기업, 조사기간동안 한 번이라도 결손을 보고한 적이 없는 기업,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모두 양인 기업, 결산일이 12월 31일인 29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의 대응치로서 유효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의하였다.

$$ETR1 = \frac{\text{법인세등}}{\text{매출총이익}}$$

$$ETR2 = \frac{\text{법인세등}}{\text{영업이익}}$$

$$ETR3 = \frac{\text{법인세등}}{\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ETR4 = \frac{\text{조정후법인세}}{\text{매출총이익}}$$

$$ETR5 = \frac{\text{조정후법인세}}{\text{영업이익}}$$

$$ETR6 = \frac{\text{조정후법인세}}{\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분석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는 최고 0.779로부터 최저 0.162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0.301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예상했던 바와 일치하지만 ETR4와 ETR5의 관계와 ETR5와 ETR6의 관계는 예상과는 달리 피어슨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자로 조정후법인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모로 어느 이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

가 다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유효법인세율의 대응치간의 순위에 차이가 나는 관계는 전반적으로 예상한 경우와 일치하였으나 ETR1과 ETR5 및 ETR2와 ETR4의 사이에는 예상과는 달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2과 ETR3 및 ETR5와 ETR6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자로 다를 법인세 대응치를 사용하더라도 분모로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분자로 같은 법인세 대응치를 사용하더라도 분모로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즉 분모로 사용되는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들을 이용하는 유효법인세율의 대응치간에도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 고종권(1997)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치로 인식되고 있는 유효세율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유효세율의 기능적 이상현상을 파악하고 대체적인 측정치로서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의 신뢰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종권(1997)은 유효세율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수치를 세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유효세율의 대체적인 측정치로서 세금보조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245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과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전순이익이 음인 경우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이 유효세율보다 신뢰성이 있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세율과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 모두 측정치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보조금의 변화가 두드러진 87년-90년과 91-93년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는 유효세율과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은 세금보조금을 표준화하는 변수의 차이일 뿐 상호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정치로 분석되어 유효세율에 비해 세금보조금이 조세부담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1) Zimmerman(1983)

기업의 차원에서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보다 정치적으로 더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부의 이전(정치적 비용)이 크다는 규모가설 전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규모와 조세(정치적 비용의 대응치)의 관계를 연방·외국·주납부세액에서 이연법인세대(deferred tax liabilities)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시계열분석한 결과 미국의 상위 50대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다른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이 단조적(monotonic)으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정치적 비용의 일종인 법인세부담율은 60년대까지는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70년대에 들어와 초대기업군이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2) 조성표(1990)

정치적 비용의 부담을 측정하고 규모가설의 가정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치적 비용에 대한 대리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정치적 비용을 기업과 외부관계집단의 대표자인 정치가 사이의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이전인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항목으로 한정하였다.

조성표(1990)는 기업규모변수로 매출액, 총자산규모, 고정자본, 자본화가치, 종업원수로 설정하였고 정치적 가시성은 규모의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나 공중에의 노출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에 관련된 변수로 시장점유율, 재벌집단에의 소속여부, 규제기업으로 설정하고, 정치적 비용의 결정에 대한 독립변수로, 이외에 위험, 자본집약도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연구를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의 '상장회사 DATABASE'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 중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후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의 2,632기업/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준조세부담율은 매출총이익대비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기부금으로 계산하고 조세총계부담율은 유효법인세율과 준조세부담율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시계열분석과 민감도분석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대규모기업군(매출액 규모 상위 10%이내인 기업)은 정치적비용가설의 예상과는 달리 기타기업군보다 적은 법인세 부담률을 보이고 있었다.

조성표(1990)는 이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규모가 비대해지면 여러면에서 비효율이 나타나며, 특히 관리의 비효율이 체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비하여 일반관리비 그리고 영업외비용등의 비중이 과다하여진다.(Andrews 1949 등) 즉, 매출총이익이후의 비용항목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유효세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둘째, 초대기업군이 기타기업군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즉 법인세 공제전이익이 동일하다 할 지라고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초대규모기업에게 유리한 세법규정이 존재하여 대기업에게 낮은 세액이 산정된다. 셋째 산업효과에 대한 이유에서이다. 초대규모기업군의 부담세율이 낮은 것은 일부 산업에서의 규모의 비경제성이나 조세혜택효과가 전업의 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암묵적조세인 준조세부담에 있어서 초대규모기업군은 기타기업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총조세부담율에 있어서는 약간 높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거의 없다.

3) 권현섭·정문현(1995)

권현섭·정문현(1995)은 유효세율의 변동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성공에 대한 부분적인 측정치를 제공하며, 유효세율은 기업규모와 정치적 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고, 정치적 비용 가설에 따라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FAS에 수록되어 있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하였고 표본기업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기업, 매출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0”이

하인 기업을 제외하여 최종 표본을 466-561개/년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규모변수로 매출액이 검토되었고 정치적비용변수로서 유효세율과 상대적 유효세율로 선정하였다. 유효세율1은 당기납부세액(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을 영업현금흐름(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유효세율2는 법인세에 다음연도의 법인세추납액과 다음연도의 법인세환급액을 고려하여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상대적 유효세율은 한 기업군의 유효세율과 소기업군의 유효세율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상대적 유효세율은 유효세율의 절대적 수준에 관계없이 각 기업군의 상대적 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일관된 평균을 제공하고 상대적 유효세율은 각 유효세율에 대해 계산되었다. 또한 유효세율이외의 정치적 비용변수로서 조세공과부담율, 기부금부담율, 접대비부담율을 선정하였다. 매출액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소기업보다 낮았다.

상대적유효세율의 분석결과 정치적 비용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낮았다. 기부금부담율은 대기업군일수록 낮은 부담률을 나타내었고, 조세부담율과 접대비부담율은 전년도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4) 노현섭 · 조용언 · 김태수(1999)

노현섭 · 조용언 · 김태수(1999)는 순손실과 조세혜택(간접감면과 직접감면)이 기업규모와 조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이론과 정치적 비용이론의 타당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조기업, 금융기업을 제외한 446-561개의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업규모가 순손실과 조세혜택을 통하여 조세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손실, 직접감면과 간접감면 변수를 포함하는 경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LISREL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경로모형은 기존연구에 있어서의 기업규모와 세율간의 관계를 4개의 경로로 분해하여 추정된다. 즉 경로모형은 기업규모에서 순손실, 직접감

면, 간접감면까지의 3가지 간접경로에 기업규모와 세율에 이르는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각 경로계수는 기업규모와 세율간의 관계의 경로에 있어서 순손실,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의 영향을 측정한다.

경로분석 분석결과 순손실과 조세혜택이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기업규모와 세율간의 관계의 상당한 부분이 순손실, 조세혜택의 간접영향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의 크기에만 관심을 두어 기업의 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Wilkie(1988)는 유효법인세율을 기업의 이익에 대한 조세혜택의 비율로 보고 유효세율은 기업의 이익변화 때문에 변할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세혜택에 따라 기업의 이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변화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상태, 투자 의사결정도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준다.

1) Stickney & McGee(1982)

Stickney & McGee(1982)는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즉 1978년 및 1980년 2개년에 걸쳐 25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미국기업들의 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규모, 자본집약도, 해외영업활동비중, 부채비율, 천연자원의 탐사·추출 및 개발사업활동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가를 군집분석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결과 부채비율과 자본집약도 및 천연자원개발사업과의 관련정도는 유효법인세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해외영업활동비중과 기업규모는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Gupta & Newberry(1997)

기존 연구들의 기본적인 한계점은 기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고 지적하고 자본구조와 자산의 구성, 다양한 재무적·투자의사결정과 조세에 대한 문제 등 기업의 특성과 유효세율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1982년-1985년의 823개의 기업과, 1987년-1990년의 91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ETR_{it} = \beta_0 + \beta_1 SIZE_{it} + \beta_2 LEV_{it} + \beta_3 CAPINT_{it} + \beta_4 INVINT_{it} + \beta_5 RDINT_{it} + \beta_6 ROE_{it}$$

기업의 규모(SIZE)의 대응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본구조의 대응치로 부채비율(LEV), 자산구성의 대응치로서 자본집약도(CAPINT), 재고자산집약도(INVINT), 연구개발투비율(RDINT)로 하고 통제변수로서 총자산이익률(ROE)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SIZE)는 Stikney&McGee(1982)에서와 같이 유효세율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LEV, CAPINT, INVINT는 TRA86이전, 이후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 관계없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RDINT는 영업현금흐름으로 측정된 ETR2와 TRA86이전에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김성기와 안숙찬(1994)

김성기와 안숙찬(1994)은 Stickney & McGee의 논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6가지의 유효법인세율을 구하였으나 실제분석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를 세전순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나눈 하나의 측정치만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과 기술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며, 기업규모는 유효법인세율과 유의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숙찬(1996)

기능중시의 조세지원제도로 인한 기업별 실질적 조세부담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개별기업의 기업특성이나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성격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개별기

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특성이나 조세지원의 혜택정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증권·은행·보험업에 속하는 기업, 12월 결산기업이 아닌 기업, 측정된 유효세율이 0보다 작은 기업, 연구대상기간 중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한정하고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연구개발투자비율, 수출비율, 이익증가율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을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기업의 규모는 총자산, 부채의존도를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자본집약도는 총자산에 대한 (유형고정자산-건설가계정)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총매출에 대한 (연구개발비증가분+개발비+경상연구개발기)비율, 수출비율을 매출에 대한 수출비율이며 이익증가율은 (t-1)도 영업이익에 대한 (t년도 영업이익 - (t-1)년도 영업이익)의 비율로 측정하고 횡단면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효세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 이후의 조세지원이 기술 및 인력개발에 많은 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이익증가율은 대체로 유효세율과 유의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한 조세지원이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의 촉진·유인이나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비용의 지급과 배당의 지급이 세법에서 달리 취급됨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보이고 있다.

5) 전규안(1997)

기업규모와 기업의 조세부담의 정도를 파악하는 많은 연구들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연구에 이용되는 유효법인세율의 대응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유효법인세율 이외에 세계

상보조금 대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업규모 이외에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등으로 보고 기업규모와 함께 고려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5년 12월 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중 최종적으로 346개의 기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시 분자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 또는 조정후 법인세 등을 이용하였으며, 분모로는 매출총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였다. 기업규모변수로서 총자산을 이용하였으며, 부채비율은 이자발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을 이용하였고, 수출비율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본집약도에서는 순유형고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가계정을 차감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세부담은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이 전반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을 보이며,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낮은가를 분석한 결과, 분모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하거나 세제상보조금 대 자기자본 비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유의적으로 조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비율이 높고, 기밀비나 접대비, 기부금의 손금한도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적어짐을 보였으며,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의 관계는 산업특성을 고려하기 전·후가 같으며 유효법인세율과 자산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산업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산업특성을 고려해도 기본적인 관계는 계속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6) 신승표(1998)

기존의 연구의 유효법인세율의 기업간, 기간별 및 산업간의 차이는 조세혜택이 기업간, 기간별 및 산업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 것에 대해 조세혜택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완전한 비례관계를 갖지

않을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으로써 법인세부담정도를 측정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토대로 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차이가 유효법인세율의 기업간, 기간별 및 산업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1996년 8월말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총 638개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장된 기업, 결산일일 12월말인 기업, 연구기간동안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계속적으로 양수인 기업 323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개 연도로 하였다.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정의식의 분석을 통하여 유효법인세율의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조세혜택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사이에 완전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유효법인세율은 조세혜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조세혜택이 양의 값을 가지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커질수록 커지고 조세혜택이 음의 값을 가지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유효법인세율의 기업간, 기간별 및 산업간 차이에 대한 실증결과 조세혜택이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작아지며 조세혜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클수록 유효세율이 크고 조세혜택의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차이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를 설명할 변수로서 기업의 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을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선정된 근거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기업규모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Zimmerman(1983)에서는 초대기업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았으나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성표(1990)에서는 초대기업군은 상대적으로 법인세부담이 낮고 준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현섭·정문현(1995)에서는 초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성기·안숙찬(1994)에서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규안(1997)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초대규모기업, 대규모기업, 중규모기업, 소규모기업으로 나눈 후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세율이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의 유효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영향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비용이론이다.

정치적 영향이론은 대기업을 조세정책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이는 더 큰 조세혜택을 가져오며 따라서 대기업을 소기업보다 더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도 대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제도가 많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를 고용하여 절세를 도모할 수도 있고 영업활동을 조정하여 최적으로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가설이다.

이에 반하여 '정치적 비용이론'은 대기업은 더 큰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므로 더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절대적인 규모로 인하여 더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활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들 기업의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결국 정치적 영향이론이나 정치적 비용이론 모두 기업규모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가설1] 기업의 영업활동성과를 통제한 후 기업규모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부채의존도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다. 따라서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및 임야 등의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업무부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손금불산입항목이다.

따라서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부채의존도가 낮은 기업보다 법인세법등에 의한 불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즉 부채의존도가 높

은 기업의 조세부담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가설2] 기업의 영업활동성과를 통제 후 기업의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부담은 높을 것이다.

3. 자본집약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설비투자를 촉진, 유인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투자에 소요된 금액의 일정비율로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완료되어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줌으로써 투자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에너지 절약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있다. 즉, 자본집약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세지원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조세부담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가설3] 기업의 영업활동성과를 통제한 후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부담은 낮을 것이다.

4. 수출비율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 이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수출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내수보다는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일수록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4] 기업의 영업활동성과를 통제한 후 수출비율이 클수록 낮은 조세부담을 보일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측정

1. 유효법인세율의 측정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유효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TR = \frac{\text{법인세등}}{\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즉, 분자의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이 될 수도 있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될 수도 있다. 분모의 이익의 대용치로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법인세율 계산에 있어서 분자는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법인세 등을 사용하고 분모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였다.

안숙찬(1996)연구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의 대용치로서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고, 전규안(1997)에서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 계산에서 분모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세무조정의 출발점이 되는 이익 측정치로서 조세지원제도가 없다면 기업존속기간 동안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합계는 각 사업년도 소득 또는 과세표준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분모로 하는 유효법인세율은 조세

특례규정의 유효성 연구나 유효세율의 선택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안숙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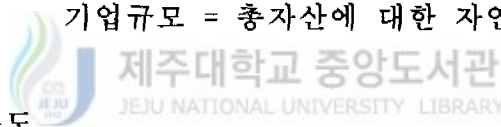
2. 설명변수의 측정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1) 기업규모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기업규모의 측정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규에서 규모의 기준으로 매출액보다는 총자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성표(1990)는 유효법인세율 규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총자산이 기업규모의 측정치로서 매출액보다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을 규모 변수로 사용하여 기업규모를 총자산에 대한 자연로그값을 이용한다.

기업규모 = 총자산에 대한 자연log



2) 부채의존도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분자로 총부채 또는 장기부채 등을 사용하며, 분모로 총자본 또는 자기자본 등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부채의존도는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채의존도를 총자산을 총부채로 나눈 것을 부채비율로 사용한다

$$\text{부채의존도} =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3) 자본집약도

자본집약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순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고 이를 총자산으로 나눈 것을 이용한다.

$$\text{자본집약도} = \frac{\text{유형자산} - \text{토지} - \text{건설중인자산}}{\text{총자산}}$$

4) 수출비율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각종 조세혜택을 받으므로, 본 논문에서의 수출비율은 총매출에서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text{수출비율} = \frac{\text{총수출}}{\text{총매출}}$$

3. 통제변수

1)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에 대한 통제변수로는 총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자기자본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text{자기자본이익률}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기자본}}$$



제3절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기자본이익률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규모별 유효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산을 기준으로 4집단으로 나누어, 자산규모에 따른 분산분석과 부분회귀분석,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으로 각 종속변수의 단일변량분석을 위하여 모수검정방법인 T검정과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순위합검정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변량분석방법으로서 매년도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TR_i = \beta_0 + \beta_1 SIZE_i + \beta_2 LEV_i + \beta_3 CAPINT_i + \beta_4 EXPORT_i + \beta_5 ROE_i$$

단, ETR_i = 기업_i의 유효법인세율

$SIZE_i$ = 기업_i의 규모

LEV_i = 기업_i의 부채비율

$CAPINT_i$ = 기업_i의 자본집약도

$EXPORT_i$ = 기업_i의 수출비율

R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이익률

또한 산업별 차이가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기업을 한국신용평가(주)의 분류기준에 따라 10개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회귀분석하였다.

제4절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1998년 현재 상장된 기업 중 한국신용평가(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FAS에 수록되어 있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하였다. 이 중 다음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다.

- ①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 ② 자기자본, 세전순이익이 0보다 작은 기업
- ③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 ④ 연구대상기간 중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기업

표본기업을 상장기업으로 한 것은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가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며 표본선정기간 중 기준①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귀속년도의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며 기준②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기준③은 조세지원이나 규제방식 등이 다른기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도별 표본기업의 수는 1994년 164개, 1995년 159개, 1996년 121개, 1997년 97개, 1998년 69개로 총 610개이다.

또한 산업별로 유효범이세율에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주)의 분류기준에 따라 산업을 10개로 분류하였다.

이는 전규안(1997)에서 산업분류와 동일하며 단지 전규안(1997)에서는 산업을 9개로 분류한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산업을 10개로 분류하고 전규안(1997)의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들을 산업10으로 분류하였다. 산업1은 음식료품제조업으로 14개의 기업, 산업2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33개, 산업3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105개, 산업4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11개, 산업5는 제1차 금속산업으로 83개, 산업6은 영향,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으로 81개, 산업7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으로 48개, 산업8은 건설업으로서 37개, 산업9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27개, 산업10은 산업1 ~ 산업9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171개의 기업으로 분류하고 총 6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1> 산업별 표본기업 수

	산 업	표본기업수
산업1	음식료품 제조업	14
산업2	섬유제품제조업	33
산업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05
산업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산업5	제1차 금속산업	83
산업6	영향,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81
산업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48
산업8	건설업	37
산업9	도매 및 상품중개업	27
산업10	기타	171
	계	610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변수의 기술통계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표본기업의 독립변수인 유효세율, 종속변수인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한 기술통계가 <표 4-1>과 <그림 4-1> ~ <그림 4-6>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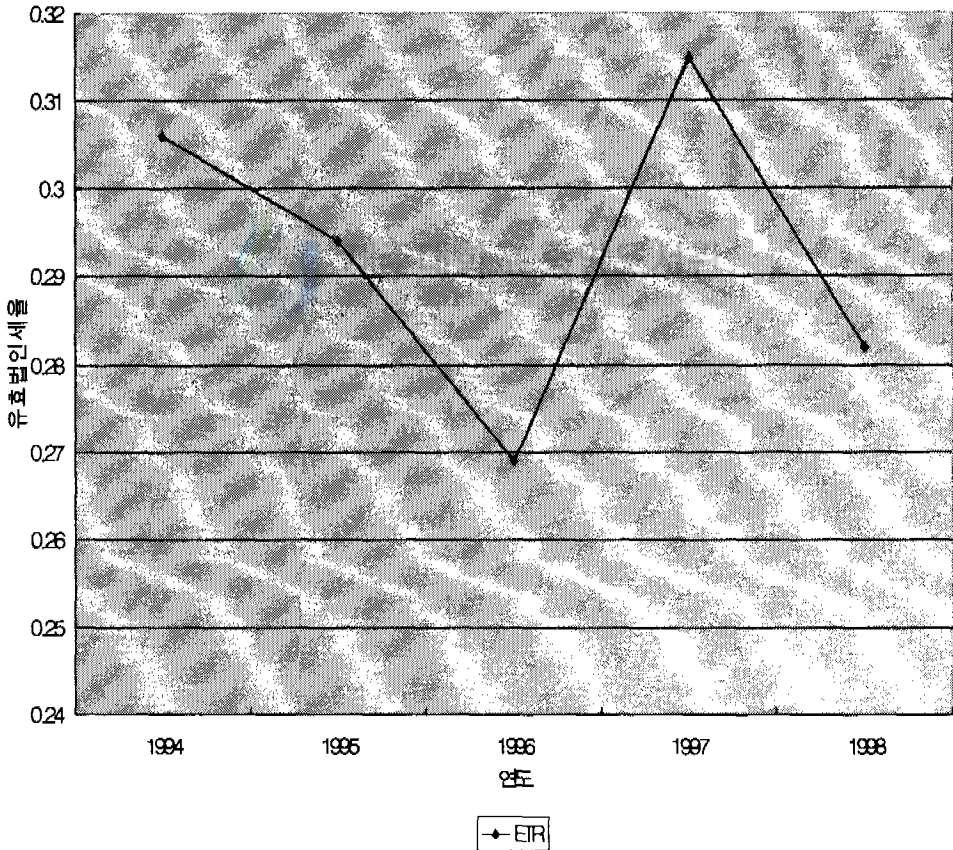
<표 4-1> 변수의 기술적 통계

구분 \ 변수		ETR		SIZE		LEV		CAPINT		EXPORT		RO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도	N												
1994	164	.306	.152	18.925	1.342	.620	.142	.210	.113	.356	.269	.124	.115
1995	159	.294	.163	19.097	1.397	.613	.146	.198	.116	.364	.278	.112	.109
1996	121	.269	.137	19.298	1.439	.631	.139	.198	.111	.359	.264	.091	.075
1997	97	.315	.175	19.539	1.382	.653	.140	.179	.098	.363	.249	.081	.086
1998	69	.282	.176	19.446	1.349	.563	.140	.228	.123	.418	.278	.119	.138
94-98	610	.294	.159	19.200	1.397	.619	.144	.201	.113	.367	.268	.105	.104

<표 4-1>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될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4년에는 164개, 1995년에 159개,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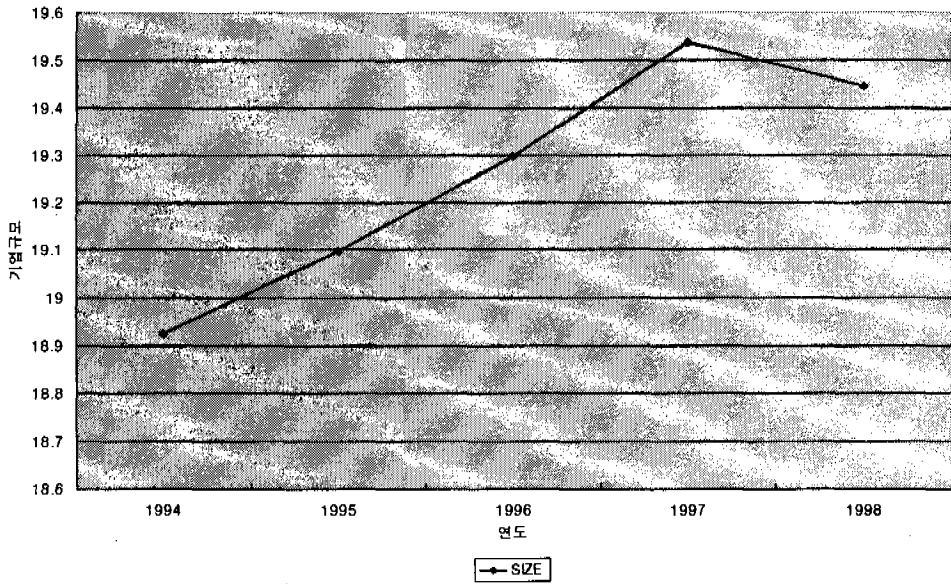
년에 121개, 1997년에 97개, 1998년에 69개의 기업으로 총 6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1997년 이후에 표본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1997년은 우리나라에 IMF가 시작되는 연도이고, 따라서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이 0이거나 (-)이거나 법인세가 0인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즉, 표본설정시 자기자본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기업을 제외하였고, 법인세 등이 0인 기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림 4-1> 연도별 유효세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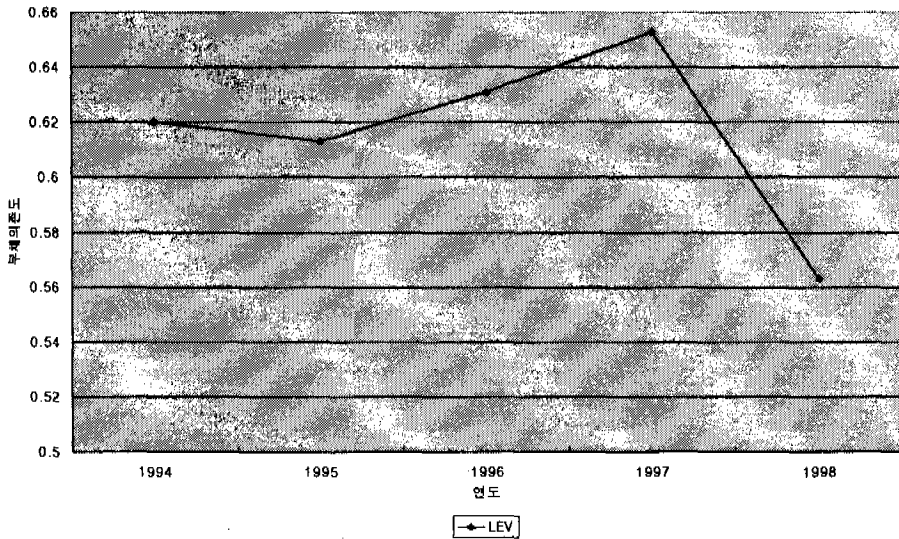


<표 4-1>과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유효세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1997년에는 급상승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7년에 시작된 IMF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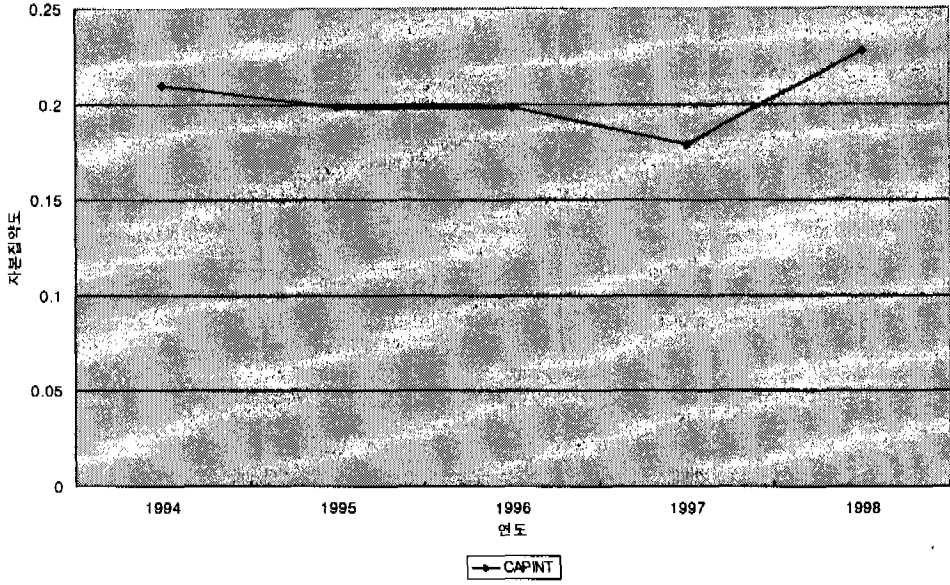
<그림 4-2> 연도별 기업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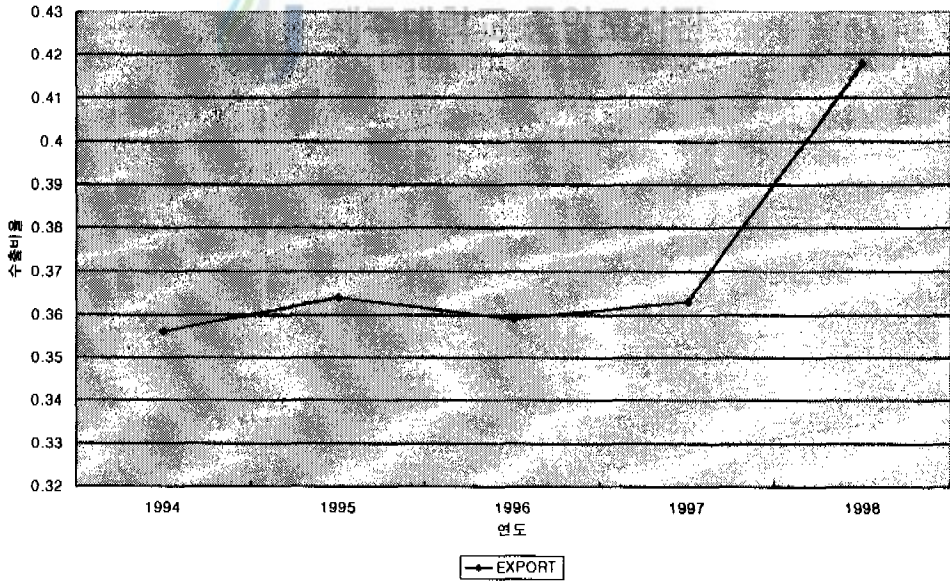
<그림 4-3> 연도별 부채의존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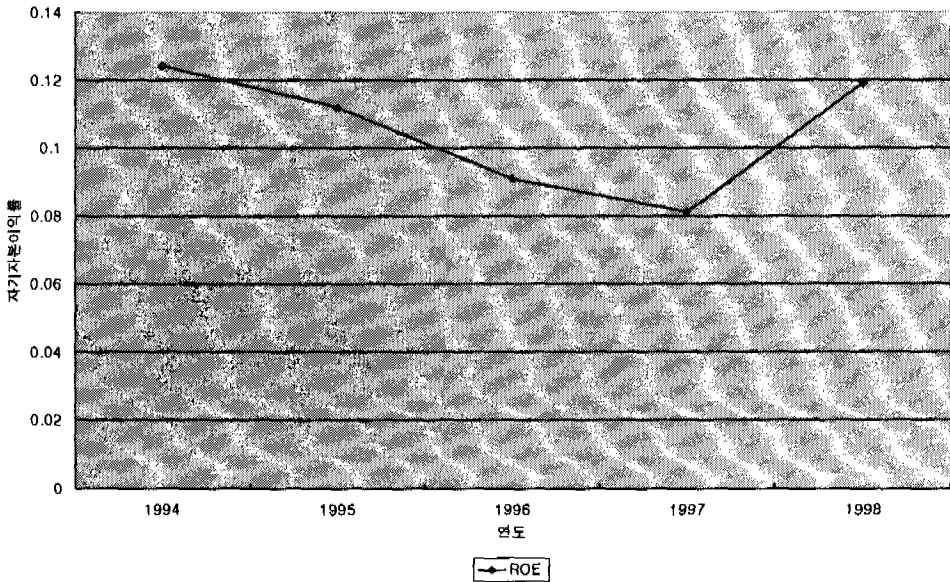
<그림 4-4> 연도별 자본집약도의 추이



<그림 4-5> 연도별 수출비율의 추이



<그림 4-6> 연도별 자기자본이익률의 추이



<그림 4-2>는 연도별 기업규모의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997년까지는 기업규모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가 1998년 이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은 연도별 부채의존도의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부채의존도는 1997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다가 19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의 연도별 자본집약도의 추이를 보면 자본집약도는 1997년까지는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이었으나 1997년 이후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의 연도별 수출비율은 1997년까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의 연도별 자기자본이익률의 추이를 보면 1997년까지는 감소추세이나 1997년 이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변수가 IMF가 시작되는 1997년을 기준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기업규모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분석

기업규모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초대규모기업은 자산규모가 상위 20%인 기업이고, 대규모기업은 상위 20%미만 ~ 40%인 기업이고, 중규모기업은 상위 40%미만 ~ 70%인 기업이고, 소규모기업은 상위 70%미만 ~ 100%인 기업으로 나누었다.

규모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Zimmerman(1983)에서는 자산규모가 상위 10%인 기업을 먼저 하나의 집단으로 나누고 나머지 기업을 3등분하여 분류하였다. 전규안(1997)에서는 Zimmerman(1983)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바꾸면서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전규안(1997)의 결과에 따라 자산을 기준으로 20%, 20%, 30%, 30%로 분류하였다.

또한 표본기업의 각 변수들의 이상점을 제거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상위 1%, 하위 1%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하였고, 또한 ETR이 1보다 큰 기업은 최대치를 1로 조정하였다.

즉, 초대규모기업은 상위 20%인 기업으로 122개, 대규모기업은 상위 20%이내 ~ 40%인 기업으로 122개, 중규모기업으로 상위 40%미만 ~ 70%인 기업으로 183개, 소규모기업은 상위 70%미만 ~ 100%인 기업으로 183개의 기업으로 나누었다.

<표 4-2>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이들 그룹들이 유효법인세율과 차이가 있는지를 ANOVA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4-2>를 보면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세율이 각각 .2793, .2616으로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의 .3481, .302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은 조세 혜택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초대기업의 경우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조세전문가를 고용하여 조세전략을 취할 수도 있으며, 계열기업에 이익이전을 함으로써 조세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규안(1997)의 결과를 다시 확인해 준다. <그림 4-7>은 <표 4-2>의 기업규모별 유효법인세율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2> 자산규모별 유효법인세율 차이에 대한 ANOVA분석

변수	LOGASS1	LOGASS2	LOGASS3	LOGASS4	R ²	F값
N	122	122	183	183	.026	5.090***
ETR	.2793	.3481	.3021	.2616		

***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LOGASSi : log(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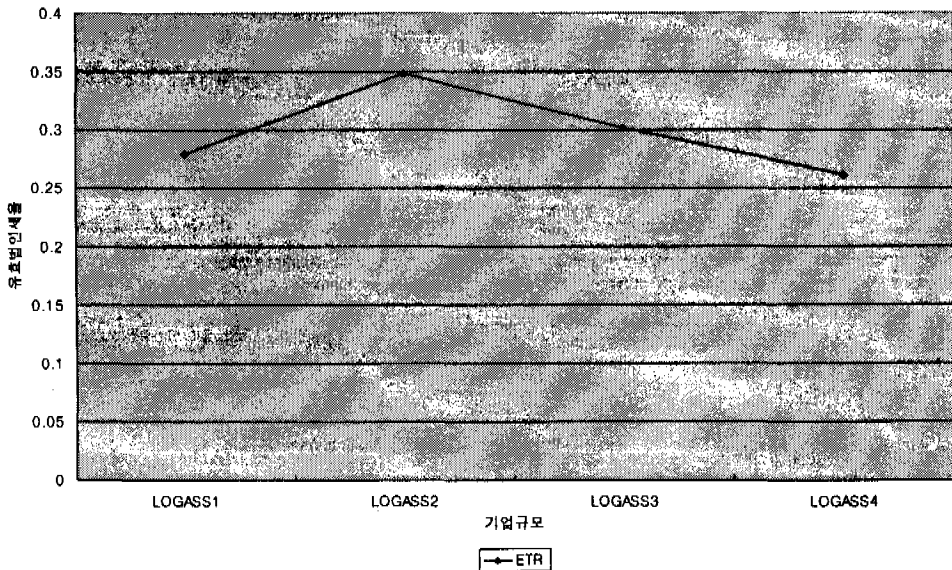
초대규모기업(LOGASS1) : 자산규모가 상위 20%에 속하는 기업

대규모기업(LOGASS2) : 자산규모가 상위 20%미만 ~ 40%에 속하는 기업

중규모기업(LOGASS3) : 자산규모가 상위 40%미만 ~ 70%에 속하는 기업

소규모기업(LOGASS4) : 자산규모가 상위 70%미만 ~ 100%에 속하는 기업

<그림 4-7>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와의 관계



위에서 발견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4-3>과 같이 기업을 자산규모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부분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3>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의 분류

	자산규모<S1	S1≤자산규모<S2	S2≤자산규모<S3	S3≤자산규모
LOGASS4	자산규모	S1	S1	S1
LOGASS3	0	자산규모-S1	S2-S1	S2-S1
LOGASS2	0	0	자산규모-S2	S3-S2
LOGASS1	0	0	0	자산규모-S3

$$S1 < S2 < S3$$

S1 : 18.2042

S2 : 19.3632

S3 : 20.5953

LOGASS: log(총자산)

초대규모기업(LOGASS1) : 자산규모가 상위 20%에 속하는 기업

대규모기업(LOGASS2) : 자산규모가 상위 20%미만 ~ 40%에 속하는 기업

중규모기업(LOGASS3) : 자산규모가 상위 40%미만 ~ 70%에 속하는 기업

소규모기업(LOGASS4) : 자산규모가 상위 70%미만 ~ 100%에 속하는 기업

5년간의 전체자료를 이용하여 부분선형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4>에 있다.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은 기업규모가 1만큼 증가하면 각각 .0418, .0028만큼 감소하고,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은 각각 .0172, .0092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정치적 비용가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이 대규모기업이나 중규모기업보다 법인세 부담률이 낮게 나오며, 기업규모와 법인세부담률간에 일관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성하와 정규언(1992),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4-4>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에 대한 부분선형회귀분석 결과

$$ETR = \beta_0 + \beta_1 \text{LOGASS1}_i + \beta_2 \text{LOGASS2}_i + \beta_3 \text{LOGASS3}_i + \beta_4 \text{LOGASS4}_i + \varepsilon_i$$

독립변수	예상부호	계수추정치	t값
절편		.3124	23.129***
LOFASS1	-	-.0418	-2.277
LOGASS2	+	.0172	.694
LOGASS3	+	.0092	.354
LOGASS4	-	-.0028	-2.860***
R ²		.0262	
F값		5.090***	

***, **, * : 각각 1%와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LOGASS_i : log(총자산)

초대규모기업(LOGASS1) : 자산규모가 상위 20%에 속하는 기업

대규모기업(LOGASS2) : 자산규모가 상위 20%미만 ~ 40%에 속하는 기업

중규모기업(LOGASS3) : 자산규모가 상위 40%미만 ~ 70%에 속하는 기업

소규모기업(LOGASS4) : 자산규모가 상위 70%미만 ~ 100%에 속하는 기업

분모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는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세제상의 혜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대규모기업이나 중규모기업에 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규모기업이 세제상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대규모기업일수록 로비(lobby)활동을 통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며, 조세 전문가를 동원하여 조세를 절약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고, 계열기업을 통해 적절한 이익이전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분석

앞에서는 단일변수, 즉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변수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에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Wilcoxon 순위합검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의 통제하에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을 평균을 기준으로하여 평균이상의 기업과, 평균미만의 기업간에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 결과가 <표 4-5>에 있다.

<표 4-5> 기업특성에 따른 ETR의 차이에 대한 t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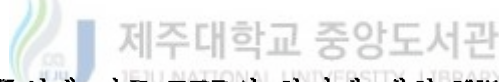
변수 연도	SIZE		LEV		CAPINT		EXPORT	
	큰기업	작은기업	높은기업	낮은기업	높은기업	낮은기업	높은기업	낮은기업
	t값		t값		t값		t값	
1994	.335	.287	.330	.279	.293	.318	.293	.314
	1.960*		2.223**		-1.055		-.817	
1995	.340	.260	.304	.282	.268	.315	.301	.288
	2.881***		.854		-1.887*		.502	
1996	.260	.275	.269	.268	.235	.291	.241	.289
	-.602		.024		-2.231**		-2.118**	
1997	.339	.290	.333	.284	.282	.336	.284	.338
	1.388		1.514		-1.482		-1.510	
1998	.318	.249	.351	.245	.221	.356	.239	.337
	1.636		2.137		-3.387***		-1.366**	
94-98	.320	.274	.312	.274	.265	.318	.276	.308
	3.480***		3.093***		-4.230***		-2.500**	

***, **, * :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적임.

표의 값은 각 변수들의 평균과 각각의 차이에 대한 t값을 의미함.

분석결과 기업규모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10%,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연도(94-98)에서는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 2>와 <표 3>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낮은 조세부담을 갖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규모에 관한 단순증가 또는 단순감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연구에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단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부채의존도의 경우 1994년에 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연도(94-98)에는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는 1995년, 1996년, 1998년, 전체연도에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비율은 1996년과 1998년, 전체연도(94-98)에 모두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규안(1997), 김성기와 안숙찬(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4-6> 기업특성에 따른 ETR의 차이에 대한 Wilcoxon 순위합검정⁴⁾

	SIZE	LEV	CAPINT	EXPORT
1994	2.13769 (.0325**)	-2.0757 (.0379**)	-1.4348 (.1513)	-2.1806 (.0292**)
1995	2.40510 (.0162**)	-1.2719 (.2034)	-2.0375 (.0415**)	.6540 (.5131)
1996	.2644 (.7915)	-.7841 (.4330)	-2.5987 (.0094***)	-1.5300 (.1260)
1997	-1.1653 (.2439)	.9595 (.3373)	-1.3405 (.1801)	-1.2705 (.2039)
1998	1.3514 (.1766)	2.0851 (.0371**)	2.9977 (.0027***)	2.0880 (.0368**)
94-98	3.4832 (.0005***)	-3.1127 (.0019***)	-4.409 (.0001***)	-2.8970 (.0038**)

***, **, * :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적임.

4) Wilcoxon의 순위검정을 위하여 값이 크거나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표의 값은 Z값과 괄호안은 P값을 의미함.

각 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Wilcoxon 순위검정법을 이용한 결과가 <표 4-6>에 나타나 있다. 전체연도(94-98)에는 1%,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는 1994, 1995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고, 부채의존도는 1994, 1998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자본집약도는 1994, 1997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수출비율은 1994, 1998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 4-5>의 결과와 일치한다.

앞에서는 단일변수간에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자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와 앞에서처럼 4단계로 분할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산을 분할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표 4-7>에 있다.

<표 4-7>을 보면 수익성에 대한 통제변수로서 자기자본이익률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2 의 값이 0.02 ~ 0.30으로 전규안(1997)에서 보다 높은 값을 얻었다. 전규안(1997)에서는 수정된 R^2 의 값이 0.02 ~ 0.08의 수준에서 나왔는데 이는 수익성에 대한 통제변수 없이 분석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기업규모는 전체연도에 걸쳐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부채의존도는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10%,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전체연도(94-98)에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규안(1997)에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 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많거나 타법인주식 등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 많아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목이 많고, 또한 기밀비나 접대비, 기부금 등의 한도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금액이 이용되는데 자기자본 대신 타인자본을 조달한 기업일수록 한도액이 적게 되어 손금불산입되는 비율이 많아지므로 이때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표 4-7>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기업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ETR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LEV_i + \beta_3 CAPINT_i + \beta_4 EXPORT_i + \beta_5 ROE_i + \varepsilon_i$$

	절편	SIZE	LEV	CAPINT	EXPORT	ROE	R ²	F값
예상 부호		?	+	-	-			
1994	.354 (1.95*)	-.0056 (-.557)	.175 (1.839*)	-.081 (-.746)	-.004 (-.098)	-.247 (-2.300**)	0.028	1.971*
1995	.140 (.749)	.008 (.817)	.086 (.829)	-.182 (-1.554)	-.004 (-.098)	-.266 (-2.230**)	.036	2.187*
1996	.453 (2.584**)	-.007 (-.749)	.119 (1.166)	-.245 (-2.135**)	-.087 (-1.856*)	-.355 (-2.157**)	.089	3.350***
1997	.831 (3.137**7*)	-.023 (-1.532)	.131 (.885)	-.232 (-1.338)	-.071 (-1.033)	-.858 (-4.181***)	.156	4.571***
1998	.085 (.308)	.013 (.835)	.310 (2.006**)	-.566 (-3.812***)	-.186 (-2.863***)	-.248 (-1.856**)	.303	6.924***
94-98	.348 (3.797***)	-.002 (-.0421)	0.136 (2.697***)	-.212 (-3.732***)	-.054 (-2.240**)	-.302 (-5.059***)	0.083	12.021***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의 값은 계수추정치와 괄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함.

SIZE : 총자산에 대한 자연log

LEV : 총부채 / 총자산

CAPINT : (유형자산 - 토지 - 건설중인자산) / 총자산

EXPORT : (총수출)/총매출

ROE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자기자본

자본집약도는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5%,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설비 투자를 촉진, 유인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특별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경제정책이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출비율은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10%,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규안(1997), Stickney 와 McGee(1982), 김성기와 안숙찬(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앞의 연구가설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 즉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등 19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 이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표 4-8>는 연도별로 자산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기업 특성과 함께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4-8>을 보면 부채의존도는 1998년에 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며, 자본집약도는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5%,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으며, 수출비율은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10%, 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이는 자산을 분할하지 않은 <표 4-7>의 결과와 일치한다.

기업규모를 자산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초대규모 기업과 중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1998년에 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995년에 10%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이는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하지만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경우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을 갖는다는 앞의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표 4-8>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에 대한 연도별 회귀분석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을 분할한 경우)

$$ETR = \beta_0 + \beta_1 \text{LOGASS1}_i + \beta_2 \text{LOGASS2}_i + \beta_3 \text{LOGASS3}_i + \beta_4 \text{LOGASS4}_i + \beta_5 \text{LEV}_i + \beta_6 \text{CAPINT}_i + \beta_7 \text{EXPORT}_i + \beta_8 \text{ROE}_i + \varepsilon_i$$

	1994	1995	1996	1997	1998
절편	.285 (.3851***)	.307 (1.190***)	.340 (4.586***)	.318 (2.737***)	.265 (2.710***)
LEV	.148 (1.608)	.124 (1.249)	.112 (1.120)	.166 (1.109)	.361 (2.462**)
CAPINT	-.078 (-.723)	-.161 (-1.375)	-.264 (-2.276**)	-.197 (-1.118)	-.614 (-4.117***)
EXPORT	-.012 (-.245)	-.002 (-.057)	-.085 (-1.820*)	-.067 (-.971)	-.154 (-2.413**)
ROE	-.225 (-2.097**)	-.227 (-1.885*)	-.292 (-1.766*)	-.810 (.0001***)	-.240 (-1.887*)
LOGASS1	-.054 (-1.439)	-.058 (-1.402)	-.041 (-1.219)	-.059 (-1.337)	.030 (.561)
LOGASS2	-.031 (-.660)	-.029 (-.554)	-.061 (-1.284)	.024 (.431)	.188 (2.816**)
LOGASS3	.012 (.275)	.011 (.222)	-.005 (-.099)	.089 (1.245)	.068 (.952)
LOGASS4	-.002 (-1.211)	-.003 (-1.752*)	-.003 (-1.559)	.002 (.876)	.001 (.402)
R2	.036	.051	.097	.1611	.4312
F값	1.763*	2.057**	2.620**	3.304***	5.685***

***,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의 값은 계수추정치, 괄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함.

LOGASSi : log(총자산)

초대규모기업(LOGASS1) : 자산규모가 상위 20%에 속하는 기업

대규모기업(LOGASS2) : 자산규모가 상위 20%미만 ~ 40%에 속하는 기업

중규모기업(LOGASS3) : 자산규모가 상위 40%미만 ~ 70%에 속하는 기업

소규모기업(LOGASS4) : 자산규모가 상위 70%미만 ~ 100%에 속하는 기업

제4절 산업특성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분석

산업특성이 본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신용평가(주)의 산업분류를 따랐다.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들의 상위 1%, 하위 1%인 기업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 자기자본이 0보다 작은 기업을 제외하였다.

산업분류 방법은 전규안(1997)과 일치하며 단지 전규안(1997)의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산업을 '산업10'으로 분류하여 10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3-1>에서 분류한 산업들의 유효세율, 자산,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의 평균이 <표 4-9>에 나타나 있다.

<표 4-9> 산업별 변수의 평균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산업10
ETR	.366	.327	.310	.259	.280	.246	.210	.419	.314	.298
SIZE	19.927	19.318	19.435	19.103	19.264	18.895	19.058	20.431	19.747	18.782
LEV	.728	.626	.601	.653	.589	.552	.712	.780	.681	.593
CAPINT	.117	.481	.403	.031	.241	.654	.305	.138	.550	.328
EXPORT	.226	.224	.252	.298	.208	.193	.256	.064	.070	.194
ROE	.117	.057	.096	.0485	.107	.127	.133	.068	.055	.126

산업1 : 음식료품제조업

산업2 : 섬유제품제조업

산업3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산업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산업5 : 제1차금속산업

산업6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산업7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산업8 : 건설업

산업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10 : 기타

$$ETR : \frac{\text{법인세등}}{\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SIZE : \log(\text{총 자산})$$

$$LEV :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CAPINT : \frac{\text{유형자산} - \text{토지} - \text{건설중인자산}}{\text{총자산}}$$

$$EXPORT : \frac{\text{총수출}}{\text{총매출}}$$

$$ROE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기자본}}$$

<표 4-10> 산업별 회귀분석결과

$$ETR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LEV_i + \beta_3 CAPINT_i + \beta_4 EXPORT_i + \beta_5 ROE_i + \varepsilon_i$$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산업10
편차	.5330 (.445)	1.4786 (1.603)	.2046 (.845)	-.3017 (-.579)	.7519 (2.97***)	.6397 (3.09***)	.4006 (1.791*)	.1622 (.147)	-.8455 (-.76*)	.3060 (1.662*)
SIZE	-.0230 (-.401)	-.0771 (-1.290)	.0092 (.679)	.0142 (.570)	-.0234 (-1.665*)	-.0221 (-2.150**)	-.0240 (-1.656)	.0159 (.246)	.0535 (1.733*)	-.0021 (-.208)
LEV	1.1531 (2.054*)	.2211 (.479)	.1549 (1.268)	.2996 (.688)	.0840 (.644)	.2228 (2.025**)	.4305 (1.752*)	-.0630 (-.097)	.1814 (.661)	.1483 (1.679*)
CAPINT	-1.7099 (-2.52*)	.6496 (1.110)	-.3459 (-2.207*)	.0905 (.175)	-.2437 (-1.456)	-.1212 (-.845)	-.1796 (-1.740)	1.5286 (2.093)	.0914 (-.237)	-.1619 (-1.429)
EXPORT	-.7416 (-1.609)	.1203 (.6940)	-.1136 (-1.762*)	-.9034 (-.043)	.0689 (.795)	-.0686 (-.714)	.0634 (.482)	-.4592 (-1.536)	-.0604 (-.642)	.0003 (.008)
ROE	-.6265 (-1.408)	-.0588 (.9155)	-.3543 (-2.712***)	1.4246 (1.071)	.3355 (-1.823*)	-.3864 (-3.470***)	-.0994 (-.516)	-.7707 (-1.229)	.3460 (.559)	-.1631 (-1.642)
R ²	.5855	-.0843	.1442	-.3957	.0289	.1791	-.0116	.1895	.2861	.0141
F값	4.673**	.503	4.503***	.433	1.488	4.491***	.892	2.684**	3.084**	1.487

***, **, * :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적임.

표값은 계수추정치, 괄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함.

변수정의는 <표 4-9> 참조.

<표 4-11> 산업특성을 고려한 부분선형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ETR = & \alpha_0 + \alpha_1 \text{LOGASS1}_i + \alpha_2 \text{LOGASS2}_i + \alpha_3 \text{LOGASS3}_i + \alpha_4 \text{LOGASS4}_i \\
 & + \alpha_5 \text{LEV}_i + \alpha_6 \text{CAPINT}_i + \alpha_7 \text{EXPORT}_i + \alpha_8 \text{ROE}_i \\
 & + \beta_1 \text{INDUM1}_i + \beta_2 \text{INDUM2}_i + \beta_3 \text{INDUM3}_i + \beta_4 \text{INDUM4}_i + \beta_5 \text{INDUM5}_i \\
 & + \beta_6 \text{INDUM6}_i + \beta_7 \text{INDUM7}_i + \beta_8 \text{INDUM8}_i + \beta_9 \text{INDUM9}_i + \varepsilon_i
 \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부호	계수추정치	t값
절편		.279	7.221***
LEV	+	.155	2.991***
CAPINT	-	-.146	-2.226**
EXPORT	-	-.043	-1.511
ROE	+	-.269	-4.536***
LOGASS1	-	-.036	-2.016**
LOGASS2	-	-.006	-.264
LOGASS3	+	.044	1.720*
LOGASS4	+	-.000	-.395
INDDUM1		.050	1.181
INDDUM2		.024	.826
INDDUM3		.018	.958
INDDUM4		-.052	-1.090
INDDUM5		-.020	-.994
INDDUM6		-.023	-1.042
INDDUM7		-.084	-3.304**
INDDUM8		.063	1.984**
INDDUM9		-.016	-.475
R ²		.127	
F값		6.223	
P값		.0001***	

INDDUM1 : 산업1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2 : 산업2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3 : 산업3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4 : 산업4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5 : 산업5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6 : 산업6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7 : 산업7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8 : 산업8에 속하면 1, 아니면 0
 INDDUM9 : 산업9에 속하면 1, 아니면 0

산업1 : 음식료품및제조업 산업2 : 섬유제품제조업
 산업3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산업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산업5 : 제1차금속산업 산업6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산업7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산업8 : 건설업
 산업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10 : 기타
 기타 변수의 정의는 <표 4-9>참조.

<표 4-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산규모에 있어서는 산업1(음식료품제조업), 산업7(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8(건설업)이 크며, 유효법인세율은 산업1(음식료품제조업), 산업2(섬유제품제조업), 산업8(건설업)이 작게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차이가 본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전에 산업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해 <표 4-10>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1의 경우 부채의존도는 10%의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집약도는 10%의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산업3의 경우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이 10%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5의 경우 기업규모와 자기자본이익률이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6의 경우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5%,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7의 경우 부채의존도에서 10%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9의 경우 기업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산업10의 경우 부채의존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특성과 기업규모에 대해 더미변수를 이용

하여 부분선형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아지고,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작아진다는 앞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기업규모에서 보면 초대규모기업이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중규모기업이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부채의존도, 수출비율, 자본집약도의 관계는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전·후가 같으나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는 유의적이긴 하지만 유의성이 다소 떨어진다. 즉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는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산업특성을 고려해도 기본적인 관계는 계속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규안(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제5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업특성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기업규모와 기업규모이외의 기업특성 즉,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기자본이익률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본 논문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1절 연구의 요약

정부는 조세를 주요수입원으로 하고, 또한 조세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한다. 특히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조세정책, 특히 기업의 조세규정에 관련된 경제정책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에 따라서 또는 같은 기업이라도 연도별로 다른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비록 동일한 법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연도라 해도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관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다양하다.

Zimmerman(1983)에서는 미국 50대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tickney&McGee(1982)에서는 기업규모는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성표(1990), 권현섭·정문현(1995)의 연구에서는 대기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소기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김성기·안숙찬(1994), 안숙찬(1996)의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규안(1997)에서는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선형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유효법인세율의 측정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세 등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고, 기업규모와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이 유효법인세율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기업규모의 경우 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20%의 기업을 초대규모기업, 상위 20%이상 40%인 기업을 대규모기업, 상위 40%이상 70%인 기업을 중규모기업, 상위 70%미만이상 100%인 기업을 소규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모로 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할 경우의 유효법인세율은 세제상의 혜택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초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대규모기업이나 중규모기업에 비해서 세제상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대기업의 경우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며, 조세전문가를 동원하여 조세를 절약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고, 계열기업을 통해 적절한 이익이전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부채의존도의 경우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숙찬(1996)의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이며, 전규안(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 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많고 타법인주식 등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 많아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복이 많고 또한 기밀비나 접대비, 기부금 등의 한도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금액이 이용되는데 자기자본대신 타인자본을 조달한 기업일수록 한도액이 적게 되어 손금불산입되는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집약도의 경우 전규안(1997)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설비투자를 촉진, 유인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투자에 소요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완료되어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줌으로써 투자로 인한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수출비율의 경우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tickney & Macgee(1982), 전규안(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산업더미변수를 도입하였는데 유효법인세율과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수출비율의 관계는 산업특성을 고려하기 전·후가 같으며 유효법인세율과 자산과의 관계는 산업변수를 도입해도 유의적이기는 하지만 그 유의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므로 유효법인세율과 자산규모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산업특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산업특성을 고려해도 기본적인 관계는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정부의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대규모의 기업의 조세부담이 낮다는 것은 초대규모기업의 조세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도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초대규모기업들은 조세전문가를 동원하여 조세전략을 취하거나 계열기업을 통한 이익이전을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초대규모기업의 조세부담정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낮은 조세부담을 보

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촉진정책 및 수출장려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 취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조세부담과 관련된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의 조세부담 측정을 위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만을 고려하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기간 동안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수인 기업과 자기자본이 음수인 기업은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영업성적이 우수한 기업만 표본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연구대상 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인해 증권시장에의 상장여부 등의 기업특성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넷째, 내재적 조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내재적 조세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둘째, 본 논문에는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했으나,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제 과세자료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자료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과세자료를 입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정확한 조세부담측정을 통해 기존 정

책을 평가하고 미래의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내재적 조세를 적절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고안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모든 연구에서는 내재적 조세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적절한 고려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 · 인용문헌>

1. 국내문헌

'94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 한국공인회계사회, 1994.

'95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1995.

'96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1996.

'97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1997.

1998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무조정실무, 한국공인회계사회, 1999.

2000 법인세 신고안내, 부산지방세무사회, 2000.

조성표, “우리나라 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10호, 한국세무학회, 1990.

고종권,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호, 한국공인회계학회, 1997.

김성기 · 안숙찬,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세무학연구」 제5호, 한국세무학회, 1993.

노현섭 · 정문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정치적비용가설과 조세혜택가설의 검증“, 「세무학연구」 제6호, 한국세무학회, 1995.

노현섭 · 조용언 · 김태수, “기업규모와 세제간의 관계를 이용한 정치적 환경이론과 정치적 비용이론의 비교”, 「세무학연구」 제14호, 한국세무학회, 1999.

박한순, “세전이익, 법인세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 「경영학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00.

신승묘,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조세혜택가설의 불완전성”, 「회계학연구」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8.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1996.

- 이창우·전규안,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학연구」 제4호, 한국경영학회, 1997.
- 전규안,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공인회계학회, 1997.

2. 외국문헌

- Sanjay Gupta and Kaye Newberry,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6.
- Scholes Myron S. and Mark a. Wolfso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Prentice Hall, 1992.
- Spooner, Gillian M, "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 National Tax Journal, 1986.
- Stickney, C. P., and V. E. Ma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
- Wilkie, P. J.,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nd Inferences about Relative Preferen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
- Zimmerman, I. L., :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ABSTRACT

A Cas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Tax Rates

Yun-Jung Heo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Ass't Professor Han-Soon Park

Summary

The government achieves what it intends to do with taxes as main source of its revenue by implementing its policy to support or regulate certain enterprises or industries with the tax revenue. Especially the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 has been used much in the governmental tax policy, especially the governmental economic policy related to the corporate tax regulations.

Therefore, the studies on the taxes of enterprise have been constantly made. This study made a demonstration analysi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thei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easured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by using the corporate tax and the net income before the corporate tax reduction and made a demonstration analysis to know whether or not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ive tax rate with the size of enterprise, liability-dependency, capital-intensity, export rate and profit rate of net worth by using t test, Wilcoxon order test and multiple recurrence analysis. As a result, the following outcome was produced:

First, as for the size of enterprise, the outcome of the analysis of four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zes of enterprise showed that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of super-large enterprises and small enterprises were lower than large enterprises and middle-sized enterprises. Second, as for the effective tax rate, enterprises showed higher effective tax rate as their liability-dependency was higher. Third, as for the capital intensity,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was shown lower as their capital intensity was higher. Fourth, as for the export rate, the effective tax rate was shown lower as the export rate was higher. Fifth, this study introduced the industry dummy variants in order to consider the effect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enterprise characteristics. Th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liability dependency, capital intensity and export rate was same before and afte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were considered, the notice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capital was rather low eve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variant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capital size are partially affected by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but their basic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eve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shows its limitation on taxation in a few aspect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only the net profit before corporate tax in order to measure the taxes of enterprises. This overlooked the problems of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presented earlier. Second, the enterprises, whose the net profit before tax is minus and owned capital is minus, were exclud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amples because only the enterprises, whose business achievement was superior, were included in the samples. Third, this study excluded

the non-listed enterprises from its objects and so could not analyze to know whether or not the taxes of enterpris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nterprise characteristics such as of listing on the stock market. Fourth, this study did not considered the intrinsic taxes because the objective method to measure the intrinsic taxes.

